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특별위로기준금액 및 장애등급별 지급비율

(제13조제1항제2호·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14조제1항관련)

1. 특별위로기준금액

특별위로기준금액	근무시기별 기준금액	
	1953.7.27. 이전	1953.7.28. 이후
67만 4천원의 180배 (1억 2,132만원)	특별위로기준금액의 80퍼센트	특별위로기준금액의 100퍼센트

2. 장애등급별 지급비율

장 해 등 급	지 급 비 율
1급	100분의 100
2급	100분의 94
3급	100분의 88
4급	100분의 82
5급	100분의 76
6급	100분의 70
7급	100분의 64
8급	100분의 58
9급	100분의 52
10급	100분의 46
11급	100분의 40
12급	100분의 34
13급	100분의 7
14급	100분의 6